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영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3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7. 16.

발 의 자 : 김영식 · 김희국 · 이종성
한무경 · 金炳旭 · 김정재
박성중 · 서일준 · 구자근
김성원 · 태영호 · 김승수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,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, 거래 질서의 개선 등에서 적합한 시정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고 있음.

그러나 애플코리아의 경우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,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으나 동의의결이 개시된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·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함.

이에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,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가

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89조 및 제124조).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”를 “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2항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4. 동의를결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제124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제89조제2항제4호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·제출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동의를결 신청 시 서류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의를결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<신 설>

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 설>

③·④ (생략)

제124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13. (생략)

<신 설>

② (생략)

4. 제2항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② -----
-----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동의를결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24조(벌칙) ① -----

-----.

1. ~ 13. (현행과 같음)

14. 제89조제2항제4호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·제출한 자

② (현행과 같음)